

大學의 社會教育 參與

黃宗建

(啓明大 教育學科 教授)

대학의 社會教育 參與는 大學 自體의 이니시아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政策當局은 대학의 자발적인 社會教育參與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 줄으로써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I. 大學과 社會教育機能

해방 후 한국의 대학은 量的인 面에 있어서 Leviathan적인 위세를 가지고 急增해 왔으며 현재 그것을 통제하는 行政力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시설 확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과 그 學生數는 대학의 발상지인 영국, 서독,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다. 즉 1982년 현재 4年制 大學數는 教育大學을 포함하여 전부 108個校에 학생수는 72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방송통신대학이나 전문대학을 포함하면 전체 230여개의 고등교육기관에 100萬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있다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시설의 확장이나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국가의 全體的 경제·사회구조나 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4年制 大學의 과분한 확장에 대한 비판 중에는 ① 대학의 質이 底下된다는 점 ② 산업구조

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高級失業者를 양산한다는 점, ③ 전문대학 육성을 억제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육을 개인의 일생을 통한 생활과 관련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전체 사회의 발전과 住民의 생활향상을 위한 것으로 再認識하고 再組織하자는 요구가 平生教育體制 確立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즉 교육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일생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作用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학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일정한 年齡의 선辈된 청소년들을 위한 형식교육만을 그 임무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전체적인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전개적 발전을 위하여 공헌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80년에 제정된 第5共和國憲法 제 29조에 모든 국민의 平生을 통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平生教育의 理念의 기초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1982년 12월

에 제정 공포된 사회교육법을 통하여 대학의 사회교육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늦은 감이기는 하나 한국의 대학이 時代的變化와 社會的 要求에 부응하기 위해서 大學의 社會敎育機能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英國의 로빈슨 報告(영국 의회의 대학교육 조사위원회 보고서, 1962)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大學의 機能은 研究와 教授(teaching) 이외에 지역사회를 위한 奉仕가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차제에 전통이 있는 英國과 美國의 大學 社會敎育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해 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大學의 사회교육 사업을 制度化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II. 英國의 校外敎育活動(Extramural Service)

英國의 大學은 오랜 동안 中世大學의 傳統 속에서 자라왔다. 비록 1836년에 설립된 London大學을 비롯하여 현재 30여개의 公共大學들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1167년에 생긴 Oxford 대학이나 1209년에 생긴 Cambridge 대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英國의 모든 대학은 한결같이 제한된 우수학생의 선발과 學問의 높은 質을 고수해 왔다. 현재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제외한 33개의 綜合大學校에는 약 12萬名의 學生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아탑적인 학문연구와 엘리뜨 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英國의 대학들은 19世紀未부터 그 門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직접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住民들을 위한 敎育事業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世紀初에는 모든 大學이 여러 종류의 校外敎育事業을 계획·추진하게 되어 大學의 社會敎育活動이 制度化되었다.

놀랍게도 英國의 社會敎育參與의 이니시아티브는 中世로부터의 傳統의 大學인 Cambridge와 Oxford에 의해서 취해졌다. 1860年代에는 잉글랜드北部에서 Cambridge 대학 교수들의 자발적인 出張講義가 있기 시작했다. 그 당시 James Stuart, H. Roscoe, T.H. Huxley 등 사명감을 가진 여러 교수들이 농촌과 산업지대의 근로자와

일반 주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곧 이어 Oxford, Manchester, London 등의 교수가 이 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으며 19世紀未에는 이 운동이 出張講義뿐만 아니라 大學에서의 對地域社會公開講座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정식으로 大學自體의 사업으로 大學公開講座가 시도된 것은 1873년 Cambridge 대학에서의 일이었으며 그 뒤 20世紀初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많은 대학에 이와 같은 사회敎育 사업이 大學內의 정규사업으로 制度化하게 되었다.

大學公開講座以外에도 大學에서 주도하는 大衆集會所(University Settlements)의 사업이 있다. London의 Toynbee Hall(1885년), Cambridge House(1889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곳에서는 특히 貧民街의 住民, 노동자, 부녀자들의 구호사업과 사회敎育 사업을 담당해 왔다.

이와 같은 英國의 大學 社會敎育事業은 1903년에 형성되게 된 노동자敎育협회(WEA)와의 협동사업으로서의 大學의 成人學級(tutorial class) 운영을 계기로 크게 확장되게 되었으며 大學과 WEA와의 이와 같은 관계는 오늘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Tutorial Class는 방법상의 특징을 표현하는 成人學級이라는 말로서 보통 2시간짜리 강의 중 강사가 준비한 강의를 하며 절반의 시간은 成人學生들간의 토론과 발표로 조직되는 형태이다. 한 강좌의 기간은 1년에 24강좌(방학 제외)짜리를 2년 내지 3년 계속하는 것이다. 강좌 내용은 주로 人文社會科學이며 제목은 學級成員들이 원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各 大學 校外敎育部에서 선정하는 강사는 그 절반 이상이 해당 대학의 교수이며 나머지는 지방의 牧師나 教師 또는 그 밖의 전문가가 선정된다. 강사료는 大學校外敎育部에서 지급하되 한편 이事業에 해당되는 경비는 회계년도마다 그 규모와 업적에 따라 文敎部에서 보조를 해 준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500명이 넘는 전임교수에 8,000명에 이르는 강사가 大學敎 成人敎講座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강사들 중에 절반은 대학교수들 중에서 선발된다.

III. 美國의 大學 擴張運動(Extension Program)

美國大學의 사회교육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반大學에서 실시하고 있는 大學公開講座(University Extension)과 다른 하나는 地方農科大學(후에 대부분 州立大學으로 발전함)에서 실시해 온 農사교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 또는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이다. 前者는 個人들의 文化的 또는 職業的 必要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의 형태로서 수익자부담 원칙의 大學公開講座이다. 한편 후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農村地域社會 住民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大學의 奉仕活動으로 政府에 의해서 지원되어 왔다.

우선 일반 대학의 公開講座의 역사를 살펴보면 19世紀未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9世紀 중엽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英國의 大學 校外教育運動의 영향을 받아 美國의 대학에서도 公開講座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즉 1869년에 Harvard 대학은 여름학교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그 뒤 계속하여 많은 대학에서 이와 같은 非正規公開講座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10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여름학교 이외에도 夜間大學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一次大戰後에는 大學公開講座나 夜間大學에 참여하는 成인들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大學에는 정식으로 社會教育部나 成人教育大學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美國에서의 大學 擴張運動은 어디까지나 大學施設을 이용하며 그 대상이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며 또한 그 내용이 正規大學 水準에 따르는 것으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出張講義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英國의 大學社會教育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겠다.

美國의 대학 성인교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역시 大學公開講座나 夜間大學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學點이나 學位를 부여하는 강좌들이다. 이

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성인이나 부인들의 時間制受講으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며 그들의 學點取得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직장생활이나 收入增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90萬名의 成人們이 이와 같은 公開大學部(Extension Division)나 夜間大學(Evening College)에서 제공하는 학점 취득과정에 등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약 80만명의 成人们은 一般大學課程에서 時間制學生 등록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1년 동안에 180萬名의 成人們이 學點을 제공하지 않는 各種 講座, 단기교육, 通信講座 또는 세미나 및 會議에 등록을 하고 있다.

한편 大學의 農촌교도사업은 현재 一般大學 社會教育의 인기나 규모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형편이나 미국의 사회교육 역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Morrill Act(1862년)를 토대로 한 지방 농과대학의 설립, Hatch Act(1887년)를 통해서는 農業實驗所의 설치 그리고 Smith-Lever Act(1914년)를 통해서는 대학의 農촌지도사업의 기초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오늘의 모든 州立大學들은 바로 이 세 가지立法에 의해서 탄생한 지방의 農촌지도 사업을 담당해 오다가 결국은 그目的을 상실한 오늘의 맘보스州立大學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地方大學의 農촌지도 사업은 모든 單位地域社會의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都市地域社會에까지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22,800萬불(1968년)의 정부예산이 農촌지도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그豫算出處比率은 8,100만불이 聯邦政府豫算이요 9,675만불이 州政府의豫算이요 4,660만불이 郡單位豫算이요 나머지가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다. 1967年 현재 미국의 農촌교육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는 가족수는 農촌과 도시를 합하여 1,400萬家庭에 이르고 있으며 이 밖에도 4H 클럽과 같은 青少年教育에 참가하는 사람이 323만명이나 된다. 미국에 農촌인구가 감소되고 生活水準이 향상되면서부터 農촌교도사업은 도시를 포함하는 지

역사회개발 사업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移民이나 年老者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IV. 韓國 大學의 社會教育 參與

우리 나라 대학의 형식상의 學制는 미국의 그것을 도입하고 있으면서 그 전통과 기능은 일본과 독일의 것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독일 대학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地域社會教育이 대학의 임무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독일의 대학은 中世로부터 이어 받은 전통적 대학의 학문적 우수성만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점이요, 둘째로는 독일에는 이미 텐마아크의 영향을 받아 成人學校(Volkshochschule)가 독자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과 같이 독자적 成人學校制度가 수립되어 있지 못하면서 독일의 상아탑적 대학의 제도를 도입해 왔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특징을 이루고 말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규모적이기는 하나 일부 대학에서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미 20년 전부터 梨花女子大學校에서는 학생들의 농촌체험을 위한 조직과 그것을 위한 조직적인 지도가 있었다. 이것이 발달하여 1968년부터는 이 사업을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대학의 教育課程과 연결시키기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대학의 社會教育事業과 같은 것으로는 1970년 겨울부터 시작된 계명대학교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처음에는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로 시작하였던 것이 그 후에는 未婚女性을 위한 강좌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각종 강좌와 협의회 개최로 발달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浦項과 구미지역의 주부 및 근로 여성들을 위한 教育事業으로까지 발달하게 되었다. 계명대학교 지역사회연구소에서의 이와 같은 시도가 있은 후 아시아財團의 후원으로 10여개의 地方大學에서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교육 사업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에는 청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안동대학, 인천교육대학 등이 포함된

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학의 자발적인 시도는 어디까지나 관심 있는 몇몇 교수의 노력의 결과였을 뿐 대학 자체에서 社會教育의 기구와 예산과 시설을 마련하여 주는 대학은 별로 없이 모처럼의 시도가 중단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1년에는 전북대학교에 社會教育研究所가 설치되어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文教部와 국립대학교 당국이 대학에서의 사회교육 연구와 사회교육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으로 다른 대학에서의 사회교육機構設置를 권장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V. 結 論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第5共和國 憲法(제29조)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을 통해 교육받을 權利와 그것을 위한 國家의 義務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교육이 일정한 연령의 青少年들에게 전부한 지식을 전달하는 形式教育으로부터 탈피하여 全體國民 개개인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한 산 教育으로 再編되어야 한다는 平生教育의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平生教育體制를 확립함에 있어서 대학은 마땅히 종래의 學究的 機能과 그 對象을 확대하여 대학 본래의 普遍性을 살리는 동시에 급변하는 社會的 實情과 그 要求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술한 憲法의 平生教育理念에 입각하여 社會教育法이 제정되었고 그 속에 대학의 社會教育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第24條).

그러나 대학의 社會教育參與는 大學 自體의 이니시아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政府는 대학의 자발적인 社會教育 參與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테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 교육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학간의 무모한 경쟁과 재정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학간의 협의회나 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야 앞으로 大學 社會教育의 制度樹立에 필요한 연구와 계획과 협동적인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